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2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 박성훈·한지아·구자근

이헌승 • 고동진 • 서지영

백종헌 · 김위상 · 박충권

곽규택·정연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,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.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31.4일로, 최근 10년이 다른 기간에 비해증가 추세를 보였으며, 특히 남부지방은 36.6일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가뭄의 연별·지역별 발생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.

매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,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.

한편,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·복구 등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,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 · 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는 누수관리 업무 범위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 을 신설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 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(안 제21조의4제1항제2호)
- 나.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도입(안 제39조 제2항 각 호 신설)
 - 1)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
 - 2)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 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3)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
- 4)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다.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에서 운영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(안 제39조제4항 신설).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사고 ·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

제39조제2항 중 "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
- 2.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제 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④ 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 하는 경우(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)에는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

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의4(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	제21조의4(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		
의 등록 등) ① 다음 각 호의	의 등록 등) ①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(이			
하 "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"이			
라 한다)를 하려는 자는 대통			
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			
인력・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			
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			
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 · 복	2		
구 등 누수 관리. <단서 신	<u>다만 사고·재해</u>		
<u>설></u>	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는 제외	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39조(급수 의무) ① (생 략)	제39조(급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일반수도사업자가 <u>부득이한</u>	② <u>다음 각 호</u>		
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
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	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		
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	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		
한다.	<u></u>		
			
<u><신 설></u>	1.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		

③ (생 략) <신 설>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 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

- 2.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 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 유로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 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.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 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 나 제한하는 경우(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)에는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